

학점인정 규정

제정 2023.04.10. 개정 2024.07.23. 개정 2025.01.13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 제24조의1(학점인정)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절차와 범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 및 대상)

- ① 학점인정은 본교 입학 전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과 다른 학교·연구기관·산업체 등에서 학습·연구·근무한 학습경험 등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인정한다.
 1. 국내·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
 2. 군 복무 중 교육·훈련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
 3. 고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(평생교육법상의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)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경우 <개정 2024.07.23.>
 4. 다른 학교·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·연구·실습 또는 근무한 사실인 경우
 5. 본교에서 개설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경우 <신설 2024.07.23.>
- ② 편입생의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
- ③ 기타 학칙 제24조의1(학점인정)에 따른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

제3조 (학점인정 절차)

- ① 학점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점인정 신청서와 그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에 대해 지도교수 및 계열(학과)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팀에 제출한다. 단, 다른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의 경우 이수 교과목 학점이 신청 교과목 학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.
- ② 교무팀은 학점인정위원회를 통하여 학점인정 평가에 관련한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.
- ③ 교무팀은 학점인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총장 승인 절차를 거쳐 대상학생에게 안내하고 학기말 성적에 반영한다.

제4조 (학점인정 범위 및 기준)

- ①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학생이 재학 중인 모집단위의 교육과정과

관련성이 있어야 하며<교육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동일계열, 관련 학과 및 관련 분야의 산업체 재직 경력 기준, 준용>, 근무경력 재직기간에 따른 학점인정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.

재직기간	인정학점	학점인정 대상교과목	평가방법
1년 이상 ~ 3년 미만	3	전공 교과목	직무기술서, 경력증명서 등
3년 이상 ~ 6년 미만	6		
6년 이상 ~ 9년 미만	9		
9년 이상 ~ 12년 미만	12		
12년 이상 ~ 15년 미만	15		
15년 이상	18		

- ② 학점인정은 매학기 과목의 유사성을 확인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, 교양 학점은 해당 학번 졸업기준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한다. 전공 학점인정은 전공 이수 교과목 한해 인정하되, 교양 학점인정은 이수 구분에 관계없이 인정할 수 있다.
- ③ 학점인정의 교과목명은 교양은 교양학점영역을 기재하고, 전공은 개설 교과목명을 기재하며, 성적평가는 P등급으로 기재한다.
- ④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은 60점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교양 교과목으로<군 교육훈련(이수 교과목명)>으로 기재하며, 성적 평가는 P등급으로 기재한다.
- ⑤ 편입생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, 성적 처리는 <전적대학 학점인정>으로 기재하고, 총 인정학점을 기재한다.
 - 1. 2학년 편입 : 38학점
 - 2. 3학년 편입 : 75학점

제5조 (기타사항)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점인정위원회에서 정한다.

부 칙(2023.04.10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7.23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01.13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